

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오현정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『장애인복지법』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활동지원사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어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

에 구체적인 개선책이 미비하므로 활동보조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이를 개정하려 합니다.
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애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선배·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